

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지원규칙

2013. 5. 1 제정
2015. 1. 29 개정
2019. 1. 10 전문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회원지원사업운영규정 제2조 제3호, 제6호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지방관공선 검사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지방관공선”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말한다.
2. “검사비”라 함은 [선박안전법](#), [해양환경관리법](#), [전파법](#), [수상레저안전법](#), [어선법](#) 등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.<개정 2019.1.10>

제3조(지원내용 등) 지방관공선의 의무검사비를 지원한다.

1. 검사비에 대한 신청은 선박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.<개정 2019.1.10>
2. 법정검사기간을 경과하여 검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19.1.10>

제4조(지원대상) 검사비 지원대상은 [지방관공선 중 검사일 이전 지방관공선재해복구공제에 등록하고 회비를 납부한 선박](#)으로 한다.<개정 2019.1.10>

제5조(지원방법) 회원이 선박의 의무검사비 지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.10>

1. 지방관공선의무검사비 신청서(별지 제1호 서식) 1부.
2. 선박검사증서 1부.
3. 검사비 영수증 1부.
4. 그 밖에 공제회에서 요구하는 서류

제6조(위임 및 준용)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19.1.10>

부 칙(2013. 5. 1 규칙 제221호 제정)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2013년도 검사비는 소급적용하여 지급한다.

부 칙(2015. 1. 29 규칙 제221호 제정)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「해양환경관리법」 및 「전파법」에 의한 의무 검사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적용한다.

부 칙(2019. 1. 10 규칙 제413호 제정)

1.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〈별지 제1호 서식〉 (제5조 관련)

지방관공선 의무검사비 신청서

선 명	
검사일자	
검사비용	일금 원정(W)
송 금 처	○금융기관명 : ○계좌번호 : ○예 금 주 :
귀회에서 지원하는 지방관공선 검사비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년 월 일 신청자(자치단체명) : (직인) 첨부서류 : 1.선박검사증서 2.검사비 영수증 3.통장사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귀하	